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35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9.

발 의 자 : 이건태 · 박균택 · 최혁진
진선미 · 이수진 · 한준호
위성곤 · 정준호 · 문대림
김기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은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고, 그 대상은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소셜믹스를 도모하고 있음.

그러나 공개추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어, 최근 서울시에서 공개추첨 위반에 대해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용인해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개추첨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발생함. 이는 비용 지불을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겨 유사례의 발생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, 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원칙을 지킨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심각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는 것임.

최근 10년 간 서울시에서만 발생했던 위반 사례가 전국적인 사례로

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공개추첨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공개추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5조제6항 및 제136조제7호의2 신설).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동·층 및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13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의2. 제55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동·층 및 호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5조(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) ①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5조(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동·층 및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</u>
제13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36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7. (현행과 같음) <u>7의2. 제55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동·층 및 호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</u>

8. (생 략)	<u>선정하지 아니한 자</u> 8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